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·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위반행위에 대한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금액의 총액은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.

가.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: 100분의 90

나.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: 100분의 80

다.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: 100분의 70

라.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: 100분의 60

3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삭제 <2016. 7. 19.>				
나. 삭제 <2016. 7. 19.>				
다.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2항제2호			
1)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기재 항목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 로 제출한 경우		500	500	500
2)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		50	250	500
3)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일부 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		30	150	300
라.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흉부 엑스 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 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36조 제2항제3호			
1) 서류를 전부 보관하지 않은 경우		50	250	500
2) 서류의 일부를 보관하지 않 은 경우		30	150	300
마.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·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· 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	법 제36조 제3항			
1)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		300	300	300
2) 보고·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 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	100	200	300